

#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증개정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0년 10월 16일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3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 11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지방세과장 조택용)

### (1) 제안이유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의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함은 물론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적용범위(제3조)

- 제3조 제2항 중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담당자의 판단 곤란과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로 완화개정.

- 제3조 중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서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실성이 없어 삭제.

#### ○ 판매인의 의무(제11조)

- 제11조 중 제1항 “판매인은 주민이 수입증지 판매소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할 것”은 판매소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 ○ 증지의 환매(제26조)

- 제26조 제1항 중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은 강제규정으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규제모델 검토시 폐지토록 지시된 사항으로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재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또는 수납하는 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써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이에 따라 우리 서구의 경우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도록 하고 있고, 서구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를 제정·공포하였음. 이번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개정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의견임.

수입증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조에서는 그 대상을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현금납부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제2항), 현금납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항).

첫째, 제2항의 경우 현행조례에서는 예외적으로 현금납부가 인정되는 사유로서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가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판단의 기준을 달리할 수가 있어 법규 적용의 통일성 및 형평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예외적으로 현금납부가 인정되는 사유를 개정안처럼 “수수료의 변경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음.

둘째, 현행 조례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이라 함은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에 대한 현금납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조례 제3조 제1항의 구에서 수입하는 대상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규칙으로 규정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개정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개정안 제11조 제1항의 삭제에 대한 의견임.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는 판매인은 주민이 수입증지 판매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판매소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됨.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수입증지의 판매소가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같이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자는 것임. 이는 판매업자가 수입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삭제하자는 안이지만, 수입증지의 판매소가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 장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소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의 측면에서 이 조항의 삭제는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참고로 수입인지 판매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4호에서는 현행조례 제11조 제1항과 유사하게 “수입인지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표지판을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26조 제1항에 대한 의견임.

조례 제26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증지의 환매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판매인이 사망하였거나 기타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잔여 수입증지의 환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 조항의 문제점은 수입증지의 환매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환매청구권자를 판매인 본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판매인이 아닌 수입증지 보유자

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임.

조례 제11조 제2항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민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비치할 것”을 의무 부과하고 있고, 판매인에게 대한 의무부과는 증지판매로 인한 일정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따라서 판매인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환매청구권은 현행조례와 같이 예외규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규정으로 규정해야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임. 판매인이 아닌 수입증지 구입자 또한 각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증지를 구입하고 대상사무의 수수료로 납부하는 관례에 비추어 보아 잔여 수입증지가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들에게 잔여 수입증지분의 환매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것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정안처럼 개정하는 것은 일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수입증지의 교환 및 환매청구권은 증지 판매인이나 그 상속인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현행조례나 개정안의 어느 조항에서도 판매인이 아닌 수입증지 보유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참고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수입인지 보유자에게도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청구권을 인정하여 “금융기관·체신관서 또는 판매인(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등에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제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년    월    일

제출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 1. 제안이유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 의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함은 물론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적용범위(제3조)
  - 제3조 제2항 중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할” 때는 담당자의 판단곤란과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로 완화개정.
  - 제3조 중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는 서구제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실성이 없어 삭제.
- 판매인의 의무(제11조)
  - 제11조 중 제1항 “판매인은 주민이 수입증지 판매소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할 것” 은 판매소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 증지의 환매(제26조)
  - 제26조 제1항 중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은 강제규정으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규제 모델 검토시 폐지토록 지시된 사항으로 삭제.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3항은 삭제한다.  
②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
-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
-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판매인이 사망하였거나 기타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잔여 수입증지를 환매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①(생략)</p> <p>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p> <p>②-----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 -----.</p> <p>(삭제)</p>
<p>제11조(판매인의 의무) (생략)</p> <p>①판매인은 주민이 수입증지판매소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할 것.</p> <p>② ~ ④ (생략)</p>	<p>제11조(판매인의 의무)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증지의 환매)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하였거나 기타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잔여 수입증지를 환매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6조(증지의 환매)①판매인이 사망하였거나 기타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잔여 수입증지를 환매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